

제 4 장 주주총회

제 20 조(소집시기)

- 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
-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 월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

제 21 조(소집권자)

-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-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2 조(소집통지 및 공고)

-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상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전자적 방법의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제 23 조(소집지)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(충청남도)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 지역 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.

제 24 조(의장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25 조(의장의 질서유지권)

-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·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6 조(주주의 의결권)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주식 1 주에 대하여 1 개로 한다.

제 27 조(의결권의 불통일행사)

-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.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28 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당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제 1 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 부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.

제 29 조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

제 30 조(주주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.